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998. 5. 6.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8년 4월 16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1998년 4월 20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56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98. 4. 27)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실장 공우홍)

가. 제안이유

- 행정절차법의 시행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우리구 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하였던 자치법규의 제·개정시의 구민의견수렴절차(입법예고·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나. 주요골자

- 입법예고의 대상(안 제4조)
 - 조례안
 - 규칙으로서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정보화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입법안
- 입법예고문 :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안 제6조)
- 입법예고 방법(안 제6조·제9조)
 - 입법예고문 작성
 - 구보게재 공고(필요한 경우 관보·신문·방송 등 게재)
 - 공청회 개최
- 입법예고기간 : 20일 이상(안 제7조)
- 제출된 의견의 처리(안 제8조)
 - 타당성 여부 검토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입법에 반영
 - 반영 등의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이준석)

동 조례(안)의 개정은 입법예고의 대상과 방법, 예고문 작성, 예고기간 및 제출된 의견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한 내용으로서 이는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는 행정절차법(법률 제5241호)제정과 법제 업무규정(대통령령 제15602호)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입안과정에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한 것으로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의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의안 번호	163
----------	-----

제출년월일 : 1998. 4. 16.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행정절차법의 시행 및 법제업무운영규정의 개정에 따라 종전에 우리구 법제사무처리규칙으로 정하였던 자치법규의 제·개정시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입법예고·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

2. 제안내용

가. 입법예고의 대상(안 제4조)

- 조례안
- 규칙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공중위생, 환경보전, 도시계획, 건축, 도로교통, 정보화 관련 제도 등)에 관한 입법안

나. 입법예고문 :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안 제6조)

다. 입법예고 방법(안 제6조·제9조)

- 입법예고문 작성
- 구보게재 공고(필요한 경우 관보·신문·방송 등 게재)

- 공청회 개최

라. 입법예고기간 : 20일 이상(안 제7조)

마. 제출된 의견의 처리(안 제8조)

- 타당여부 검토

-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은 입법에 반영

- 반영 등의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는 의견제출자에게 통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 제15602호 '97. 12. 31)

나. 협의사항 : 없음.

다. 예산조치 : 필요없음.

라. 조례(안)내용 : 별첨

첨 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포구 자치법규(서울특별시영등포구 조례·규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입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입법내용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예고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
2. “입법예고”라 함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 입법안의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입법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1. 공중위생
2. 환경보전
3. 도시계획
4. 건축
5. 도로교통
6. 행정심판
7. 시험제도
8. 정보화관련제도
9. 농지 기타 토지제도
10. 기타 구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의 사항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대상외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의 예외)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입법 내용의 성질, 기타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하기가 곤란한 경우
3. 상위 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경우
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입법예고문 작성) ① 구청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 입법예고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입법예고문안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취지
3. 입법 주요내용
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구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고방법) 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 또는 입법안의 전문을 구보에 공고·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의한 방법과 시보·관보 또는 일간신문·방송·컴퓨터통신 또는 소속 각 기관의 게시판에의 입법예고문 게재 또는 게시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하

여 이를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당해 입법예고안의 내용과 직접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기관과 그 분야의 전문가 등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제8조(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구청장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에 반영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에 대하여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법안에 관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관계기관 협의 등) 구청장은 입법을 함에 있어,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상급행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승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자치법규 입법의견 제출) ① 누구든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에 의한 의견제출외에 자치법규의 정비·개선에 관련되는 의견을 구청장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 받은 검토한 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진행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된 것으로 본다.